



미 국



## 미국 체납징수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정보신청기관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 I. 입법 배경

1. 이 법의 입법 당시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한 장래 세수의 손실도 예상되고 있었다.<sup>1)</sup>
2. 나아가 납세자간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만연되어 자진납세제도(voluntary compliance)의 기반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sup>2)</sup>

### II. 주요 내용

1. 미국 국세청은 민간기관이 징수한 금액의 25%가 넘지 않는 금액을 당해 민간기관과

의 계약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3)</sup>

2. 민간체납징수기관은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Department)에 의해 지명된 체납자를 찾아내어 접촉하고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5년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sup>4)</sup>
3. 민간체납징수기관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납세자의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sup>5)</sup>
4. 하도급 계약자(subcontractor)들에 의한 납세자들과의 계약체결 행위, 품질보증서비스(quality assurance service)를 제공하는 행



1) Reason for Change, Use of Private Collection Agencies by the IRS: Testimony Before the Subcomm, on Oversight of the House Comm, on Ways and Means (2003) (statement of Commissioner of IRS Hon. Mark W. Everson), available at 2003 WL 11717931.

2) 앞의 글.

3) IRC §6303(c).

4) IRC §6303(b)(1)(A)와 (B).

5) IRC §6303(b)(1)(C).

위, 징수고지(collection notice)를 자의적으로 행하는(compose) 행위 등은 금지되며,<sup>6)</sup> 다른 행위의 경우에도 재무부 장관의 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sup>7)</sup>

5. 세금징수과정에서 미국 국세공무원에게 부과되고 있는 금지사항은 민간채납징수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8)</sup>
6. 미국 국세청은 민간채납징수기관의 행위로 부터 면책된다.<sup>9)</sup>
7. 해당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의 행위와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74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인 민사소송(civil action)을 민간채납징수기관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sup>10)</sup> 나아가 그 구제수단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sup>11)</sup>

### Ⅲ. 입법의 기대효과와 전망

1. 민간기관(private collection agency)에 채납징수를 위탁함으로써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과도한 채납세금징수업무를 줄여줌과 동시에, 미국 국세청으로 하여금 좀더 난해한 채납징수문제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sup>12)</sup>
2. 그러나 조세징수는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업무이며, 따라서 이는 국세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3. 그러므로 민간기관에 의한 징수행위는 납세자의 평등권과 동등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이에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폐지 법안이 각각 상정되어 있다.

변 해 정

(미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6) IRC §6306(b)(3).

7) IRC §6306(b)(4).

8) IRC §6306(b)((2).

9) IRC §6306(d).

10) IRC §7433A(a).

11) IRC §7433A(b)(3).

12) Charles Grassley (Senator, Senate) Takes Issue with Taxpayer Advocate's Dismissal of Private Debt Collection Program, Congressional Press Release (February 2, 2007).